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8-72호
2018. 9. 28.(금)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8-139호)1

공 고(3)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737호)2
-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공고 제2018-740호)4
-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742호)7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741호)9

공									
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오정동 277-27	오정로52번길 34	2018. 9. 28.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5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345-11	덕암로 50	2018. 9. 28.	건물신축	행정구역명(덕암동)을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8-49호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계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하수도관	아스팔트	66.0	151.8
		동춘당로23번길 56-14 일원	대전맑은물(주)			66.0	151.8

2. 공사기간 : 2018. 10. 01. ~ 2018. 11. 30.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위치도 및 현장사진



동춘당로23번길 56-14 일원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38조 규정에 의거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I.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공시기준일 : 2018년 6월 1일
2. 대 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006번길 68 (오정동 100-12번지) 외 77호
3.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4. 열람장소 : 대덕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http://tax.daejeon.go.kr>)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18. 9. 28. ~ 10. 29.
2. 신청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대덕구청 세무과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제출
4. 결과통지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18.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2018. 6. 1. 기준으로 주택특성 조사를 하고, 한국감정원 3인의 검증으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대덕구청 세무과 및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http://daejeon.go.kr/tax/index.do>),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kras.go.kr>)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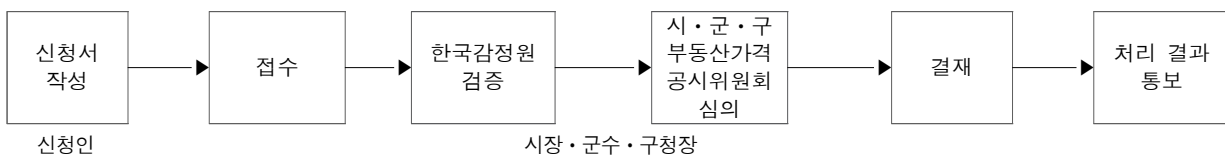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체납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함에 장기간방치 된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35조, 제741조 및 제750조, 제76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공고기간: 2018.9.28.~2018.10.12.(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금액	비고
김○태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162, 10 *동 30*호(퇴계동, 퇴계현대1 차 아파트)	우편물이 반송함에 투함 됨.	195,155,600원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5. 공시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체납)를 통보하오니 2018. 10. 17.(수)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654-099192-17105 (대덕구청 의료기금(특)수입금출납원)

-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 및 “지방세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담당(☎ 042-608-6385)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안

2. 제정이유

대덕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라. 생활임금의 결정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마.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과 위원의 임기에 대해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바.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해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사. 생활임금의 장려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경제과

(전화 : 042-608-6916, FAX : 042-608-3899, E-mail : sbd106@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과 담당자 서복동 (전화 : 042-608-69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임금의 적용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대덕구 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9조에 따른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구 본청·의회사무과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 본청·의회사무과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인원·예산확보)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사용인원, 임금 등(「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주 유급휴일 수당, 관계법령에 따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는 사용부서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임금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특별위원)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 제 과	
담 당 자 연 락 처	서 복 동 042-608-6916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